

제3029호
2023. 10. 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람	기 관 의 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8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54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7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9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효율성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다.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5조)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참여 불가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요청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 (02) 3396-4955 / FAX. (02) 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llegible]

마. 회의(안 제6조)

- 심의안건 발생,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 요구시 개최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바. 의견청취(안 제8조)

- 안건 심의에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3396-4914, 팩스 : 02-3396-8657, email : slpark199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한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54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5호(2023.07.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우리 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원
- 2) 면 적 : 4,756.1㎡ [대지 3,875.8㎡, 정비기반시설 880.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조혁중)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9. 2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용도	비고
1,937.08	67,491.89	49.98	1,114.34	113.7	24/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아. 정비기반시설 등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관리청	면적 (㎡)	종류	관리청	면적 (㎡)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	-	도로	중구	687.2	교보자산신탁(주)	아이비투자을지로(주)
			공원	중구	193.1	교보자산신탁(주)	
계	-	-			880.3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3396-5772)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	연 번	권 소 재 의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 (㎡)		이 용 상 황	용 도 지 역 또는 지 구	소 유 자		용 도 / 구 조	동 수 / 층 수	연면적	소 유 자		권 리 의 종 류	권 리 자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용 / 사용	1	수표동 56-1	대	588.9	588.9	대지	일반상업지역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업무철론	15/10층	6,440.1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신탁			
	2	수표동 56-4	대	245.3	245.3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연외조	15/2층	316.5						
	3	수표동 56-7	대	124.6	124.6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벽돌	15/2층	210.6						
	4	수표동 56-9	대	233.2	233.2	대지	일반상업지역			업무철론	15/8층	2,006.3						
	5	수표동 56-10	대	211.9	211.9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15/4층	836.1						
	6	수표동 56-11	대	123.9	123.9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15/4층	851.4						
	7	수표동 56-12	대	135.7	135.7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15/4층	430.7						
	8	수표동 56-14	대	265.2	265.2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15/5층	1,135.2						
	9	수표동 56-15	대	375.9	375.9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벽돌	15/1층	327.0						
	10	수표동 56-17	대	228.1	228.1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15/5층	612.8						
	11	수표동 56-18	대	36.4	36.4	대지	일반상업지역											
	12	수표동 56-22	대	532.9	532.9	대지	일반상업지역	이순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5, 204동 205호	근생연외조	15/2층	79.34	이순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5, 204동 205호				
	13	수표동 56-23	대	78.3	78.3	대지	일반상업지역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근생벽돌		115.7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신탁			
	14	수표동 56-24	대	211.7	211.7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775.1						
	15	수표동 56-25	대	122.4	122.4	대지	일반상업지역											
	16	율리외2가 101-32	대	90.6	90.6	대지	일반상업지역			근생철론		336.9						
	17	수표동 56-3	대	83.9	83.9	대지	일반상업지역	이순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5, 204동 205호	근생철론	15/5층	372.2	이순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5, 204동 205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용 /사용	18	수표동 56-5	대	81.0	81.0	대지	일반상업지역	대한지공 (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	근생벽돌	15/3층	727.3	대한지공 (주)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				
	19	수표동 56-6	대	100.5	100.5	대지	일반상업지역											
	20	수표동 56-16	대	315.0	315.0	대지	일반상업지역											
	21	수표동 11-9	대	524.7	524.7	대지	일반상업지역	중화민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광화문빌딩 6층(대만대표부)									

제출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치도

